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희생자의 범위 확대 등 〉

-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654호)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108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문대림의원안], [위성곤의원안]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6
1. 희생자의 범위 확대	6
2. 유족에 대해 보상금 지급	11
3. 위원회의 심사 비공개 규정 신설	18
4. 위원회의 결정서 작성 및 교부 근거 마련	21
5. 제주4·3사건 등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처벌	23
6. 특별재심 청구권자 범위 확대	27
7. 청구기간에 관한 특례 신설	31
8. 입양신고 특례에 관한 시행령 근거 규정 마련	35
9.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제주4·3치유와 회복사업으로 변경	38
10. 기념사업 등의 업무 범위 확대	41
11. 제주4·3복지의료재단 설립 등	45
12. (실무)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 시 제출 기한 설정	50

[문대림의원안], [위성곤의원안]

I. 제안경위

1. 문대림의원안

가. 제 안 자 : 문대림의원 등 51인

나. 제 안 일 : 2024. 8. 8.

다. 회 부 일 : 2024. 8. 9.

2. 위성곤의원안

가. 제 안 자 : 위성곤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9. 20.

다. 회 부 일 : 2024. 9.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문대림의원안

현행법은 제주4·3사건의 객관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제주4·3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아직 제주4·3사건 당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던 피해자와 희생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완전한 과거사 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며,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업무를 ‘제주4·3

평화재단’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국비와 지방비를 일원화하여 유족이 참여 하는 별도의 공익재단으로 운영 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제주4·3사건 관련 기록을 보존 및 홍보하고 국내외 인권단체와 교류·협력하여 세계화할 필요성과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강력한 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희생자의 범주에 수형자로 구금되었던 사람을 포함시키고 보상 대상에 희생자의 유족을 추가함으로써 배상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가 제주4·3복지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기념사업의 범위에 제주4·3사건의 기록 보존 및 홍보·활용과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추가함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권한을 명시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제주4·3사건의 기억을 통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2호, 제5조, 제16조 및 제24조제3호, 제24조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제24조의2 신설, 제25조, 제27조제2항 등).

2. 위성곤의원안

제안이유

이 법은 2000년 제정 이후 2021년 전부개정 등 여러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보완되어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희생자에 대한 보상에 이바지하여 왔음.

그러나 현행법상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강제 연행·구금되어 고문과 폭행에 시달렸음에도 수형기록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은 희생자에 포함되지 않고, 아픔을 겪어온 유족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 근거가 없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헌법재판소는 과거 이 법률과 관련한 결정문에서 ‘제정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음을 감안하면 가능한 한 희생자의 범위를 폭 넓게 인정함으로써 입법의 취지를 살리는 등의 조화로운 법률인식이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4·3희생자가 포함되지 않은 유족들만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유족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연행·구금된 사람을 희생자에 포함하도록 범주를 넓히고,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청구권을 확대하는 한편, 유족에 대한 보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아픔을 치유함은 물론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에 유족들에 대한 보상을 포함 (안 제1조).

나. 희생자의 범주에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연행 및 구금된 사람

을 포함 (안 제2조제2호).

다.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에 유족에 대한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안 제5조제2항제9호).

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의 신청접수와 조사, 사실상 혼인 관계 또는 사실상 양친자관계의 결정과 관련한 위원회의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안 제7조의2 신설).

마. 위원회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사실상 혼인관계 또는 사실상 양친자관계의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가 기재된 결정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바. 고의성과 무관하게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역사적 사실의 부인·왜곡·날조 및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31조).

사. 특별재심의 대상 범위를 희생자로 한정하지 않고, 재심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4조).

아. 보상 대상에 유족을 추가하고, 연행 또는 구금 희생자에 대한 보상규모를 규정함(안 제16조).

자. 형사보상 및 국가배상의 청구기간 및 시효 기준을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규정함(안 제18조의6 신설).

차.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트라우마 치유사업과 혼동할 여지가 많아 제주4·3 치유와 회복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함

(안 제23조).

카.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복지증진 및 의료지원을 위하여
제주4·3복지재단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자금 출연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2).

Ⅲ. 검토의견

1. 희생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

개정안들은 희생자의 범주에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수형자로서 구금(문대림의원안)되었거나 연행 및 구금(위성곤의원안)되었던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문대림의원안	위성곤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제2조(정의)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희생자”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u>사람</u> 또는 수형인(受刑人)으로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u>결정된</u> 사람을 말한다.	2. ----- ----- ----- ----- ----- <u>사람</u> 또는 ----- ----- ----- <u>결정되거나 구금되</u> <u>었던</u> -----.	2. ----- ----- ----- ----- ----- <u>사람,</u> <u>연행 및 구금된 사</u> <u>람</u> 또는----- ----- ----- <u>결정된</u> -----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 따른 ‘희생자’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

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으로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의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임.

개정안들은 희생자의 범주에 기존의 희생자 외에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연행되었거나 구금되었던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연행이나 구금은 형사절차상 행해지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강제적 처분으로서 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은 현행법에 따라 희생자로 규정되어 있는 수형인(受刑人)과 같이 형의 선고에 이르지 않는 않았으나 신체적 자유 침해라는 피해 요건이 인정될 수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의 제정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음을 감안하면 가능한 한 희생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입법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및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되지 않는 조화로운 법률인식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취지¹⁾ 등을 감안할 때 “연행이나 구금된 사람”을 희생자에 추가하려는 개정안의

1) 다만 희생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이 제주4·3사건의 혼란 중에 군과 경찰의 과도한 진압으로 인하여 무고하게 생명을 잃거나, 상해를 입은 자들을 신원(伸冤)하고, 화해를 통하여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민족화해와 민주발전을 도모하며,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그 제정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음을 감안하면 가능한 한 희생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입법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및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되지 않는 조화로운 법률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사건기간 중 제주4·3사건과 관련한 사망자등 가운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이에 부수되는 시장경제질서 및 사유재산제도를 반대한 자 가운데 그 정도를 살펴 희생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해나가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이념과 이 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할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238등, 판례집 13-2, 383 [각하])

내용은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현재 위원회가 법의 취지를 살려 희생자의 범위를 최대한 폭넓게 인정하는 것을 감안해도 개정안에 따른 구금조치는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객관적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에 상당부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에 따른 수형인>

구분	인정유형
수형인	4.3사건 당시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와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²⁾ -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인 경우 ※ <u>수형인명부, 판결문 등 재판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를 제출한 사람</u>
수형인 분류	① 사 망 : 수형 중 또는 석방된 후 4.3기간 중 사망한 사람 ② 행방불명 : 수형 중 행방불명된 사람 ③ 후유장애인 : 석방된 후 생존해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④ 수형인 : 석방된 후 4.3기간 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석방된 후 현재 <u>까지 생존해 있는 사람</u>

※ 자료: 행정안전부

참고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관련자”의 범위에 “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을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한국전쟁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전후의 유사한 시기에 발생한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률의 경우³⁾에는 “연행이나 구금된 사람”을 희생자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없고 희생자의 정의를 동법과 같이 사망자, 수형자, 행불자, 후유장애자로 한정하고 있음.

한편,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은 2024년 9월말 기준으로 희생자 14,871명, 유족 119,242명 등 총 134,113명이며, 2022년 1월 11일 신설된⁴⁾ 보상 근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 및 접수와 지급 결정,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결정 현황>

구분	희생자					유족
	계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자	
인원(명)	14,871	10,610	3,704	222	335	119,242

※ 자료: 행정안전부

보상금 지급 신청 및 접수는 2022년 6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 기간을 나누어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9월말 기준으로 10,177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5,430명에 대하여 4,711억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됨.

3)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745호, 2022. 1. 11., 2022. 4. 12.시행)

<보상금 신청 기간 및 신청 인원>

구 분	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추가신청
신청기간	'22.6.1.~ '25.5.31.	'22.6.1.~ '22.12.31.	'23.1.1.~ '23.6.30.	'23.7.1.~ '23.12.31.	'24.1.1.~ '24.6.30.	'24.7.1.~ '24.12.31.	'25.1.1.~ '25.5.31.	~'26.12.31.
신청인원*	14,871명	2,117명	2,500명	2,796명	2,660명	2,689명	2,109명	-

* 7~8차('23.1.~6.) 희생자·유족 신고에 따른 희생자 추가 결정으로 보상금 지급신청 공고 ('22.5.20.) 당시보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증가될 수 있음

※ 자료: 행정안전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은 2024년 현재 70년 이상 장기간의 시간이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 한국전쟁 전후의 혼란한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제주4·3사건 당시 연행되었거나 구금된 사실에 대한 근거자료 부재로 인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희생자의 범위 확대에 의한 보상금 지급 대상의 확대는 대규모 재정이 소요됨에 따라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재정 당국과의 협의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2. 유족에 대해 보상금 지급(안 제1조, 제5조, 제16조)

개정안들은 희생자 외에 유족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문대림의원안	위성곤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u>희생자에 대한 보상</u> 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u>보상</u> ----- ----- ----- ----- -----.	제1조(목적) ----- ----- ----- ----- ----- <u>보상</u> ----- ----- ----- ----- -----.
제5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8. (생략) 9. <u>희생자에 대한 보상금</u> 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10. ~ 12. (생략)	제5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8. (현행과 같음) 9. <u>희생자 및 유족</u> ----- ----- ----- 10. ~ 12. (현행과 같음)	제5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8. (현행과 같음) 9. <u>희생자 및 유족</u> ----- ----- ----- 10.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 15. (생 략) ③ ~ ⑨ (생 략) 제16조(보상금) ①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u>사람에</u>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희생자의 일실이 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후단 신설> 1. 사망 또는 행방불	음) 12의2. 제24조의2에 따른 제주4·3복지의료재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 13 ~ 15. (현행과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6조(보상금) ① -----<u>사람과 그 유족에</u>----- ----- ----- ----- ----- ----- ----- ----- ----- ----- ----- ----- 이 경우 희생자로 결정된 <u>사람의 유족이 다수인 경우에는 다수의 유족이 받는 보상금 합계의 한도액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보상금으로 한다.</u> 1. -----	음) 13 ~ 15. (현행과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6조(보상금) ① -----<u>사람과 유족에</u>----- ----- ----- ----- ----- ----- ----- ----- ----- ----- ----- 1. -----
--	---	--

<신 설>

		<u>수를 곱한 금액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u>
② 후유장애자로 결정 된 사람이 그 후유장 애 외의 원인으로 사 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아 <u>제1항제2호</u> 에 따른 보 상금을 지급한다.	② ----- ----- ----- ----- ----- ---그 사람과 그 유 족에게 <u>제1항제2호</u> -- -----.	② ----- ----- ----- ----- ----- ---그 사람과 그 유 족에게 <u>제1항제2호</u> --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 음)	③ ~ ⑦ (현행과 같 음)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희생자의 일실회익과 장기간
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
급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들은 사건 당시 희생자와 경제공동체였던 유족도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을 희생자의 유족에게까
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유족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보상금 지급 범위>

사유	현행		문대림·위성곤의원안	
	대상자	보상금액	대상자	보상금액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	최대 9천만원	희생자 및 그 유족	최대 9천만원
후유장애	희생자	최대 9천만원	희생자 및 그 유족	최대 9천만원
수형인 희생자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당사자	최대 9천만원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당사자 및 그 유족	최대 9천만원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당사자	최대 4천5백만원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당사자 및 그 유족	최대 4천5백만원
기타	후유장애자로 결정되고 그 후유장애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당사자	최대 9천만원	후유장애자로 결정되고 그 후유장애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당사자 및 그 유족	최대 9천만원
연행 또는 구금 피해 (위성곤의원안)	신설		연행 또는 구금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	지급 결정 연도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에 구금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 문대림의원안과 관련하여 희생자의 유족이 다수인 경우 유족이 받는 보상금 합계의 한도액은 각 호에 따른 보상금임.

다만, 개정안들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과 관련한 다른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상당한 재정부담이 요구되므로, 타법과의 형평성 측면 등에서 지급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

한 특별법」,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및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① 희생자 등에 대한 금전지원 규정도 전혀 두고 있지 않거나(거창사건법), ②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만을 규정하고 있거나(노근리사건법), ③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과 생활보조금만을 규정(여순사건법)하고 있음.

<한국전쟁 전후 과거사 사건 보상금 등 지원현황>

구분	희생규모	지원사항(보상유형)				
		위령사업	보상금	의 료 지원금	생 활 지원금	기타
제주4·3사건	14,871명 (사망행불 14,314, 장애 222, 수형 335) ※ 희생자유족 심사결정 중	○	○ (사망·행불 9천만원, 후유장애·수형 9천만 원 이하)	○ (희생자)	○ (희생자)	명예 회복
여순사건	696명 (사망 561, 행불 134, 수형 1) ※ 희생자유족 심사결정 중	○	×	○ (희생자)	○ (희생자)	명예 회복
노근리사건	228명 (사망150, 행불13, 부상65)	○	×	○ (희생자)	×	명예 회복
거창사건	934명(사망) ※사망자만 희생자로 인정	○	×	×	×	명예 회복

* 희생규모는 24년 9월 말 기준 인원임

** 제주4·3사건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피해자에게는 월 70만원, 유족에게는 월 10만원,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는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거창사건 등의 경우 거창군의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지원 조례」 및 산청·함양군의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6개월 이상 관할지역(거창, 산청, 함양) 거주 유족에게 월 10만원을 지급

※자료: 행정안전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희생자 보상금과 동일한 규모로 유족 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재 보상금 지급 예상액(약

1조원)의 2배인 2조원이 소요되어 대규모 추가 재정부담이 수반되어 유족에게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다른 과거사 입법례들도 유족에 대한 별도의 보상을 규정하지 않고, 희생자의 사망·행방불명에 따라 「민법」의 재산상속인이 보상금을 상속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3. 위원회의 심사 비공개 규정 신설(위성곤의원안 제7조의2)

개정안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의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사실상 혼인관계의 결정을 위한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및 사실상 양친자관계의 결정을 위한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한 위원회의 심사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위성곤의원안
<신 설>	제7조의2(조사의 비공개) 제6조제2항제3호·제7호 및 제8호와 관련한 위원회의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 또는 회의록, 회의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르면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기밀, 개인의 명예훼손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
3. 법령에서 비밀로 분류하고 있거나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
4.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

회의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 하기로 결정한 사항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의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사실상 혼인관계의 결정을 위한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및 사실상 양친자관계의 결정을 위한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등은 희생자 결정, 보상금 지급 등과 맞물려 민감한 사항으로 이들 사항에 대해 비공개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이들 사항에 대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회의 또는 회의록, 회의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유족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다만, 투명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비공개 심사는 부적절하다는 의견, 희생자·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공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제시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화는 가족관계등록부, 혼인관계, 양친자관계 결정 등의 비공개 심사의 필요성, 투명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 심사 보장 가능성, 희생자·유족들의 명예회복 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으므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심사내용을 비공개 원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위원회의 결정서 작성 및 교부 근거 마련(위성곤의원안 제12조의2)

개정안은 위원회의 결정서 작성 및 교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위성곤의원안
<신 설>	제12조의2(결정서의 작성 및 교부) ① 위원회는 제12조, 제21조의2, 제21조의3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가 기재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제12조, 제21조의2, 제21조의3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 혼인신고 또는 입양신고로 신분관계가 변동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서 등본을 교부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사안을 심의·의결하고, 심의 결과에 대해 결정서를 작성한 후, 결정서 원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하고, 실무위원회는 통보받은 결정서 정본 3부 및 결정 통지서 3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개정안은 위원회 운영세칙에 규정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사항을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사항(법 제12조) 외에 혼인신고의 특례(법 제21조의2) 및 입양신고의 특례(법 제21조의3)에 관한 사항 또한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결정서의 작성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임을 감안할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위원회 운영세칙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제5조의3(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결정서 작성 및 결정 통지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의2제5항의 사안을 심의·의결하고, 심의 결과에 대해 별지 제9호 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한 후, 결정서 원본 1부를 보관해야 하며, 영 제13조의3제5항 또는 영 제18조의3제5항 또는 영 제18조의5제5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심의결과 통보시 결정서 정본 3부를 함께 송달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정서 정본 3부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결정 통지서 3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 서식의 결과 통지서를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결정서 정본 3부와 결정 통지서 3부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타 과거사 관련법에 위원회의 결정서 작성 및 교부에 관하여 규정한 입법례가 없음을 고려해야 하고, 결정서 작성 및 교부 등 세부적 행정절차는 운영의 탄력성, 개정의 용이성 등 행정효율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위원회 운영세칙에 규정하여, 필요시 세칙 개정을 관계기관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5. 제주4·3사건 등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처벌(위성곤의원안 제13조 및 제31조)

개정안은 공개된 집회 등에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 4·3사건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위성곤의원안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누구든지 <u>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u>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 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① ----- <u>공개된 집회 또는 출판물, 신문, 방송,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u> ----- ----- ----- <u>유포하여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하거나</u> ----- ----- -----.
<신설>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조(벌칙) ① ~ ③ (생략) <신설>	제31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13조를 위반하여 제주4.3사건에 대하여 부인·비방·왜곡·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u>

④ (생 략)	<u>벌금에 처한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

현행법은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금지규정의 위반 행위에 대한 별도의 벌칙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현행 금지규정이 벌칙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으나, 진상조사 결과 부인 또는 왜곡이나 제주4·3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행위 등을 포함하여 그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불문하고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307조 등 명예훼손에 관한 죄로 해당 법리에 따라 처벌이 가능함.

제주4·3사건은 폭동적 시위진압을 시작으로 반군 진압을 명분으로 한 민간인 학살 등이 이루어져 제주도민의 생활 기반을 파괴하고 토착 제주도 문화가 말살되는 등 국가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바, 2006년 국가 차원에서 최초로 공식사과가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4·3사건에 대하여 폄훼·왜곡하는 발언행위 등이 공공연하게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⁵⁾

이에, 개정안은 공개된 집회,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하거나 희생자·유족 등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허위사실 유포죄”로 구성하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행위가 예술·학술, 연구·학설 등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위법성 조각사유를 둬으로써 새로운 방식의 형법적 구성요건과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제주4·3사건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아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봄.

유사한 입법례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⁶⁾에 따른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가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과거사 사건 관련 유사 입법례, 제주4·3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의 양태와 정도,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벌의 신설 여부와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결정하

5) 4.3왜곡-편향 인사 잇따라 임명... 제주도 '공분', 오마이뉴스, 2024. 9. 11.

6)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여야 할 것으로 봄.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희생과 명예를 존중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나, 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6. 특별재심 청구권자 확대(위성곤의원안 제14조)

개정안은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그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 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 희생자는 그 유족, 희생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위성곤의원안
제14조(특별재심) ① <u>희생자로서 제주 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u>	제14조(특별재심) ① <u>제주4·3사건</u>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 희생자는 그 유족, 희생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현행법에 따르면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개정안은 희생자에 한정된 특별재심 청구요건에서 희생자 요건을 삭제하고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그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 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 희생자는 그 유족, 희생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청구권자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적 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사법적 구제의 폭을 넓히려는 취지로 보임.

먼저, 희생자 요건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충족하여야 하는 “희생자” 요건을 삭제하면 특별재심의 대상이 되는 당초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수형인 명부의 등재와 제주4·3사건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요건이 완화되어 특별재심 청구권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특별재심이라는 제도 자체가 특수한 경우에 한정된 절차라는 점에서 희생자 요건 삭제 시, 재심청구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게 되어 일반재판도 전부 무효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특별재심 청구권자의 요건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 개정에 따른 입법적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다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 희생자는 그 유족, 희생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추가한 것과 관련하여,

개정안이 이미 특별재심 요건에서 희생자 요건을 삭제한 이상 희생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이고, 현행법 제14조제4항⁷⁾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까지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정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임.

<현행 및 개정안의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희생자 생존시	· <u>희생자로서</u>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 받은 사람 또는 수형인 명부에 등록된 사람	·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수형인 명부에 등록된 사람

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특별재심)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구분	현 행	개정안
희생자 심신장애 또는 사망시	·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 8촌 이내의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직계인척(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등) ※ 형소법 제424조제4호 준용	· (희생자)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 (희생자 결정을 받지 않은 사람)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소법과 동일)

참고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다른 법률(「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노근리 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및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특별재심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희생자’ 요건을 삭제하여 희생자가 아닌 사람까지 확대하는 것은, 재심청구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게 되어 희생자가 아닌 경우의 일반재판도 무효화해 재심 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현행법 제14조제4항(형소법 준용)에 따라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개정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7. 형사보상 및 국가배상의 청구기간에 관한 특례 신설(위성곤 의원안 제18조의6)

개정안은 형사보상 및 국가배상의 청구기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위성곤의원안
<신설>	제18조의6(청구기간에 관한 특례) ① 제12조,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2조,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늦은 날을 「민법」 제166조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1. 제12조,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 2. 제14조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무죄재판이 확정된 날 ③ 제20조와 제21조에 따른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현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가족관계등록부와 관계된 위원회의 결정 이후 희생자의 유족이 「형사보상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청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희생자의 유족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배·보상 청구 가능기간>

	현행	개정안
보상청구 가능 기간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간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혼인신고의 특례, 입양신고의 특례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년간
배상청구 가능 기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혼인신고의 특례, 입양신고의 특례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 특별재심에 따른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이 확정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3년간

과거사 개별법 중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다른 과거사 법률은 형사보상 및 국가배상 청구기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⁸⁾에서만 형사보상 청구기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화는 보상금 청구기간의 연장 필요성, 다른 과거사 개별법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5·18보상법」을 제외한 타 과거사 관련법에 형사보상 및 국가배상 청구기간을 연장 규정한 입법례가 없고,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형사보상법」 및 「민법」 등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청구기간 연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형사보상청구 기간에 관한 특례)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203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
3.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 2호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②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203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장은 배·보상을 위해 수반되는 재정소요에 변동이 발생하는 사안이
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8. 입양신고 특례에 관한 시행령 근거 규정 마련(위성곤의원안 제21조의3)

개정안은 현행 위원회운영세칙에 규정되어 있는 입양신고 특례에 관한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위성곤의원안
제21조의3(입양신고의 특례) ① ~ ④ (생략)	제21조의3(입양신고의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1991년 1월 1일 이전에 희생자의 양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종전의 「민법」(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67조에도 불구하고 <u>사실상</u>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 및 입양신고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 ----- ----- ----- ----- -----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사실상</u> ----- ----- ----- ----- -----.

현행법에 따르면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1991년 1월 1일 이전에 희생자의 양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종전의 「민법」(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 말한다) 제867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위원회운영세칙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음.

개정안은 현행 위원회운영세칙에 규정되어 있는 입양신고 특례에 관한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양신고 특례에 관한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임을 감안할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위원회 운영세칙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제5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결정에 대한 신청 등) ③ 제1항에 의해 신청인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과 이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 가능 범위는 영 제13조제1항의 각 호 및 법 제21조의2제1항, 법 제21조의3제1항, 법 제21조의3제5항과 같다. 단, 법 제21조의3제5항에서 위원회가 희생자(행방불명된 사람에 해당한다.)와 사실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날이 1955년 9월 22일 이전인 경우에 한하여 실제 입양일과 관계없이 1955년 9월 22일부터 입양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결정한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현행 「민법」상 폐지된 ‘사후양자 제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그 요

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나, 법 개정 당시 정부안은 입양신고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법안 심사과정에서 삭제되었으며, 현재 「위원회 사무처리 세칙」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므로, 법 개정 필요성은 국회 논의를 통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9.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제주4·3치유와 회복사업으로 변경 (위성곤의원안 제23조)

개정안은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제주4·3치유와 회복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위성곤의원안
제23조(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	제23조(제주4·3 치유와 회복사업) ①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에게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u>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u> 을 실시할 수 있다.	----- ----- ----- ----- ----- <u>제주4·3 치유와 회복사업</u> ----- -.
② 제1항에 따른 <u>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u>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u>제주4·3 치유와 회복사업</u> -----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에게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주4·3
평화재단 등의 단체에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
음.⁹⁾

<현행 시행령에 따른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 수행 주체>

1. 제주4·3평화재단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3. 다른 법률에 따라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 등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치유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행정안전부장관
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그런데, 현행법 외에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
영에 관한 법률」(이하 “트라우마치유센터법”이라 함)에 따라 국립제
주트라우마치유센터가 2024년 7월 1일부터 개원하여 트라우마 치유사
업을 수행 중이며 과거사 관련 피해자들에게 치유·재활 등 트라우마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현행법에 따른 치유사업과 상호 중복될
소지가 있음.

9) 현행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제주4·3평화재단에서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가
2024년 7월 1일 개관하여 운영 중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현황>

구분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116번길 19 (옛 국군광주병원 인근)	제주특별자치시 중앙로 273 2층
인원	정원 13명 ※ 광주광역시 공무원 4명 별도 파견	정원 13명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3명 별도 파견
규모	대지 4,000㎡, 건물 2,200㎡ ※ 총사업비 107억 2,400만원(국비 100%), 사업기간 2021~2024년, 2024.4월 준공	전용면적 458㎡ ※ 임차
시설현황	상담실6, 맞이방, 물리치료실1, 프로그램실4, 심리검사실1	상담실2, 맞이방, 물리치료실1, 프로그램실2
예산	1,63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기관운영출연금 918백만원 - 사업출연금 712백만원	1,26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기관운영출연금 884백만원 - 사업출연금 376백만원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에, 개정안은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제주4·3치유와 회복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트라우마치유센터법에 따른 트라우마 치유사업과 현행법에 따른 치유사업을 구별하기 위한 취지로 미루어 볼 때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현재 제주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에서 과거사 관련 피해자들에게 치유·재활 등 트라우마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혼동의 여지가 있으므로,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치유와 회복사업'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논의를 통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10. 기념사업 등의 업무 범위 확대(문대림의원안 제24조)

개정안은 기념사업의 범위에 제주4·3사건의 기록 보존 및 홍보·활용과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문대림의원안
제24조(기념사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희생자 및 유족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4조(기념사업 등) ----- ----- -----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제주4·3사건 관련 <u>유적</u> 의 보존·관리	3. ----- <u>유적과 기록</u>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신설>	4의2. 제주4·3사건 기록의 <u>홍보·활용</u>
<신설>	4의3. 제주4·3사건 관련하여 <u>국내외 인권 단체와 교류·협력</u>
5. (생략)	5.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희생자 및 유족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추념 행사 거행 등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가능 기념사업(법24조)>

1. 추념 행사 거행
2. 위령공원·위령묘역 조성, 위령탑·사료관 건립
3. 제주4·3사건 관련 유적 보존·관리
4. 제주4·3사건 관련 연구 및 교육
5. 그 밖의 제주4·3사건 관련 기념사업

개정안은 이러한 기념사업의 범위에 제주4·3사건의 기록 보존 및 홍보·활용과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제주4·3사건을 한층 더 기리기 위한 취지로 보임.

<현행과 개정안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가능 기념사업(법24조)>

호	현행	개정안
1	추념 행사 거행	좌동
2	위령공원·위령묘역 조성, 위령탑·사료관 건립	좌동
3	제주4·3사건 관련 유적 보존·관리	제주4·3사건 관련 유적 및 기록 보존·관리
4	제주4·3사건 관련 연구 및 교육	좌동
4의2(신설)	-	제주4·3사건 기록 홍보·활용
4의3(신설)	-	제주4·3사건 관련 국내외 인권 단체 교류·협력
5	그 밖의 제주4·3사건 관련 기념사업	좌동

다만,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건에 대한 기록 보존 및 홍보·활용,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바, 이러한 내용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다른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로, 기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는 유사입법례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기념사업 규정 유사입법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기념사업) 정부는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희생자 추모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4조(기념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자폭탄 피해로 사망한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추모묘역 및 위령탑
2. 그 밖에 피해자의 추모에 필요한 사업

② (생략)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기념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기념관 건립
2.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보존·관리 및 전시
3. 위령공원 조성

4. 그 밖에 기념 관련 사업

② (생략)

「5·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90조(기념·추모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념·추모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생략)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현행법 제24조제5호의 ‘그 밖의 제주4·3사건 관련 기념사업’을 통해 제주4·3사건 관련 기록의 홍보·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며, 현행법 제24조제4호에 근거하여 현재도 국비지원을 통해 국내외 평화교류사업, 유네스코 등재 등을 추진하고 있어 개정 실익이 크지 않고, 타 과거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현행법은 기념사업의 범주에 대해 이미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원사업의 확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1. 제주4·3복지의료재단 설립 등(안 제23조의2 및 안 제24조의2)

개정안들은 제주4·3복지의료재단의 설립 및 제주4·3복지의료재단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문대림의원안	위성곤의원안
제5조(제주4·3사건진상 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 ① (생략)	제5조(제주4·3사건진상 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제5조(제주4·3사건진상 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 ----- -----.	②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9. <u>희생자</u> 에 대한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9. <u>희생자 및 유족</u> ----- ----- -----	9. <u>희생자 및 유족</u> ----- ----- -----
10. ~ 12. (생략)	10. ~ 12. (현행과 같음)	10. ~ 12. (현행과 같음)
<신설>	<u>12의2. 제24조의2에 따른 제주4·3복지의료재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u>	
<신설>	<u>제24조의2(제주4·3복지의료재단의 설립 및 출연 등) ①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4·3사</u>	<u>제23조의2(제주4·3복지재단의 설립 등) ① 제주4·3사건 관련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복지증진 및</u>

	<u>건 관련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과 의료지원을 위하여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5조제2항제12호의2에 따라 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하며, 이하 “제주4·3복지의료재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u> <u>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사업을 제주4·3복지의료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u>	<u>의료지원 등을 위하여 제주4·3복지재단을 설립한다.</u> <u>② 제주4·3복지재단은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u>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주4·3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u> <u>④ 그 밖에 제주4·3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5조(제주4·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위원회가	제25조(제주4·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 ----- ----- ----- ----- ----- ----- -----	제25조(제주4·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 ----- ----- ----- ----- ----- ----- -----

의결한 추가 <u>진상조</u> <u>사, 희생자 및 그 유</u> <u>족의 생활안정 및 복</u> <u>지증진 등</u> 기타 필요 한 사업을 수행할 목 적으로 설립되는 재단 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 <u>제주4·3사건의 진상</u> <u>규명을 위한 추가 진</u> <u>상조사 등</u> ----- ----- ----- ----- -----.	----- <u>진상조</u> <u>사, 희생자 및 그 유</u> <u>족의 생활안정, 복지</u> <u>증진 및 의료지원 등</u> ----- ----- ----- -----.
--	--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제주4·3평화재단은 2008년 10월 16일에 설립되어 추가진상 조사, 추모·유족복지, 문화·학술연구, 평화교육, 평화교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데, 세부적으로 유족복지와 관련하여 생존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진료비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4·3평화재단의 희생자, 유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

구 분	대 상	국비/지방비	근 거	지 원 내 용
4·3생존희생자 지원	4·3 생존희생자	지방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구 분	대 상	국비/지방비	근 거	지 원 내 용
4·3유족진료비 지원	4·3희생자 유족 결정자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국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외래진료비 중 일부 지원
4·3희생자며느리 진료비지원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지방비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자침」	도내 지정병원에서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개정안들은 기존의 제주4·3평화재단 이외에 제주4·3복지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출연·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제주4·3복지의료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생존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 및 생활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들에 따른 내용은 현행법 제25조에 따라 제주4·3평화재단에서 추진가능한 사업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제주4·3평화재단과 일정부분 역할이 중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들의 입법화는 제주4·3복지의료재단의 설립 필요성 및 이에 따른 기대효과, 국민적 공감대 및 재정당국과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현행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제주4·3

평화재단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이므로 별도의 재단을 설립할 필요성 및 실익이 크지 않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재단의 설립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2024년 7월 1일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를 개소하여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정신적·신체적 치유와 회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목적을 가진 기관을 추가로 설립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2. (실무)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 시 제출 기한 설정(문대립 의원안 제27조)

개정안은 (실무)위원회로부터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을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30일까지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문대립의원안
제27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생략)	제27조(조사권 및 자료제출의 요구)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 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은 <u>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 구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u>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을 받 은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 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또는 실 무위원회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 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현행법은 (실무)위원회로 하여금 희생자 및 유족 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희생자, 증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실무)위원회의 증언, 진술 청취 및 검증 또는 조사 실시 사유>

1. 희생자 및 유족 결정
2.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3.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4.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5. 직권재심 청구 권고
6. 실종신고 청구
7. 추가 진상조사
8. 보상금 등의 지급

또한, 현행법은 이러한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실무)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실무)위원회로부터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을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30일까지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추가 진상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예외규정 없이 제출기한 및 기한의 연장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이 행정기관이나 관계기관 등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과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한 대부분의 입법례¹⁰⁾는 현행규정과 유사하다는 점 등을 심사시 감안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타 과거사 입법례에서 정당한 사유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 자료제출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예외규정 없이 제출기한 및 그 기한의 연장만 규정하는 것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자료의 제출에 과도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등을 대상으로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